

<論說>

家畜防疫에 關한 小考 [I]

金 炳 星

畜産業이 發展되어감에 따라서 家畜의 防疫, 衛生의 管理, 畜産物의 衛生等 家畜衛生의 重要도가 더욱 漸高되어 가고 있습니다. 筆者는 이와같은 家畜衛生面의 諸分野中 特히 家畜防疫의 重要性和 그 實施方法等에 關한 現實的으로 우리나라가 直面하고 있는 諸問題에 關하여 考察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家畜防疫은 畜産을 專業으로 하는 集團家畜群에 對하여도 重要하거나와 우리나라와 같은 零細農家에 導入된 家畜이 그中 單一頭라도 不意의 事故나 疾病으로 폐死하거나 罹病하였을 때에는 그 飼養主는 深刻한 經濟的 損失을 免치 못하고 있는 實情이니만큼 이러한 零細農家에서 役用 또는 副業用으로 飼育하고 있는 家畜에 對하여도 極히 重要한 意義를 가지고 있습니다. 家畜防疫 實施의 原因을 形成하는 家畜傳染病의 種類는 그數가 許多하며 어떠한 形態로서 動物로부터 動物로, 動物로부터 사람으로, 또는 사람으로부터 動物로 相互間에 깊은 關連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認定됩니다.

O I E (國際獸疫事務局), F A O, W H O, 專門委員會에 依하여 公認되고 있는 家畜傳染病의 數만하드라도 120種以上이나 되며 이中 人獸 共通傳染病이 80種 以上입니다. 이와같은 많은 家畜의 傳染病은 畜産基盤에 對하여 큰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을뿐 아니라 公衆衛生과도 密接한 關連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中 우리나라에서 每年 發生되며 政府에서 重要視하고 있는 傳染病의 主要種類는 畜牛에 關하여 氣腫疽, 牛結核, 부루세라症, 炭疽, 豚에 關하여 豚코레라, 豚丹毒, 독소푸라스마症, 鷄에 對하여 뉴켄슬病, 추白痢症, 白血病, 畜犬에 關하여 狂犬病等이며 이 以外에 國內에는 發生이 없지마는 國內侵入을 豫防하기 爲하여 休戰線 隣接地帶牛에 對하여 牛疫豫防注射과 牛肺疫檢索을 每年 實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家畜傳染病의 發生狀況을 考察하건데 特히 他國과 差異가 있는 것은 國際的인 惡性 家畜傳

染病인 口蹄疫, 牛肺疫 및 牛疫의 發生이 없다는 點입니다.

이는 이와같은 傳染病의 國內侵入을 繼續 防止하고 國內 家畜防疫의 能率的인 成果만 거둔다면 今後의 우리나라의 畜産의 安全性을 뒷받침할 수 있는 同時에 畜産의 世界市場에의 發展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生覺됩니다. 이와 反對로 公衆衛生을 重要視하는 時代에 狂犬病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껏 每年 約 40—50餘件式 發生되고 있는 實情은 國內的으로나 對外的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家畜 및 畜産物의 輸出實績은 漸次增加되어 가고 있으며 同時에 從前에는 稀小하였던 世界各 地方으로부터의 乳牛, 種豚, 乳山羊等의 導入이 빈번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事實은 國外的 家畜傳染病의 國內 侵入의 確率이 높아가고 있는것을 뜻하는 것이겠습니다.

現在까지 우리나라에 導入된 家畜中 乳牛는 大部分이 美國으로 부터이고 約 400頭가 “뉴-지란드”에서 導入된 것이며 其他家畜들은 주로 美國 日本等地에서 輸入된 것으로서 그 나라의 防疫對策은 우리나라와 差異가 있는點도 許多하며 여사한 나라에는 乳牛의 假性結核, 放線菌症, 其他 우리나라에서 아직 널리 取扱되지 않은 傳染病이 있는 나라이므로 輸入當時 動物 檢疫所에서도 各別히 留意하여 徹底한 檢疫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家畜傳染病의 發生狀況은 그나라 家畜 및 畜産物의 輸出入에 決定的인 影響을 주는 것입니다. 그例로 美國은 캐나다, 뉴-지란드等 몇個國을 除外한 全 世界地域 (全亞細亞包含)을 口蹄疫 發生地域으로 認定하여 偶蹄類의 動物 및 그 生肉의 國內輸入을 輸出入 動物檢疫法으로 禁하고 있으며 日本은 우리나라를 包含하여 亞細亞 地域을 口蹄疫, 牛肺疫, 牛疫等の 汚染地 또는 汚染될 의心이 있는 地域으로 認定하여 偶蹄類의 動物 및 그 肉의 輸入을 禁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畜産業發展의 安定을 維持하기 爲하여 農林部 告示 第405號로서 日本, 臺灣, 北美 및 中美, 뉴-지랜드 地域을 除外한 他地域을 口蹄疫, 牛肺疫, 또는 牛疫 發生地로 認定하여 偶蹄類의 動物 및 그畜產物 輸入을 一切 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隣邦國中 日本 및 臺灣을 除外한 其他 國家 即 香港 泰國 印度네시아 등 모-든 나라가 口蹄疫, 牛肺疫 또는 牛疫中의 一種 또는 全部가 常時 發生하고 있는 事實과 畜産業이 發達된 西歐各國 特히 丁抹, 스웨덴, 西獨, 佛蘭西等 各國에 口蹄疫이 發生되고 있으며 濠洲에도 牛肺疫이 發生되고 있는 事實도 우리나라로서는 關心을 가져야할 問題이라고 生覺됩니다.

이와같은 國家間의 傳染病 防疫을 爲한 禁輸措置는 그 傳染病性狀을 疫學的으로 檢討하여 그나라 農民의 家畜衛生에 關한 知識水準, 畜產의 經營形態, 政府의 家畜防疫에 關한 能力, 및 畜產의 重要度에 따라 決定될 것입니다.

家畜防疫을 適正히 實施하기 爲하여는 于先 國內外의 그 發生狀況을 迅速 正確하게 把握하여야 함은 勿論 他國의 防疫實情을 確認하는 것도 좋은 方法의 하나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家畜防疫 實態를 他國에 正確하게 紹介하여 相互協助下에 健全한 家畜防疫 事業을 實施하기 爲하여 우리나라는 1953年 11月 18日에 佛蘭西 巴리에 있는 國際獸疫事務局 (Office International Epizooties)에 正會員國으로 加入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國際機構의 目的은 ① 國際의 協調를 必要로 하는 家畜傳染病의 病理 或은 豫防에 關聯된 實驗의 或은 其他 研究를 創案하고 調整한다.

② 家畜의 傳染病의 經過와 그 豫防에 使用된 方法에 關하여 一般的인 關心을 갖게하는 모든 事實과 文書를 搜集하고 締約國政府 或은 그 衛生 施設에 注意를 喚起시킨다.

③ 家畜衛生 政策에 關한 協定案을 檢討하여 加盟國에 家畜의 傳染病 豫防策을 提供한다. 라고 協安內容에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同事務局內部規約第5條의 規定을 紹介하며는 다음과 같습니다.

第5條 加盟國은 本事務局에 對하여 아래와 같은 事項을 提示한다.

1. 電信으로 一定한 國家 或은 地域에서 發生한 牛疫과 口蹄疫의 始初發生에 關하여 流行이 되기 前에 通告한다.
2. 定期的으로 國際委員會에서 採擇된 計劃에 따라

通報를 作成한다.

通報에는 左記의 家畜傳染病의 發生과 蔓延狀況에 關한 情報를 掲載한다. 牛疫, 口蹄疫, 牛肺疫, 炭疽, 羊痘, 狂犬病, 鼻疽, 媾疫, 豚고레라. 前記項에 言及한 家畜傳染病의 目錄은 加盟國 政府의 承認을 條件으로 委員會가 修正을 할수 있다.

加盟國은 本事務局에 家畜傳染病에 對한 豫防措置 特히 傳染病 發生國으로부터 그의 領域을 保護하기 爲하여 國境에서 取한 措置에 關해서 報告한다.

possible 限 本事務局에서 照會하는 質疑에 關해서도 回報을 하여야 한다로 規定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國際協定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義務의으로 每月 國內 家畜傳染病 發生 月報와 家畜保健年鑑 및 其他 資料를 同局에 送付하고 있으며 一方同局으로부터 世界各國의 家畜傳染病 發生 狀況 또는 措置狀況을 月報 및 年報等으로 接受하여 家畜檢疫이나 傳染病豫防에 좋은 參考資料로 利用하고 있습니다.

本機構의 加入한 國家는 우리나라를 爲始하여 約70餘個國이며 每年 美貨 約 619弗에 相當하는 分擔金을 政府費에서 同機構에 支拂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家畜傳染病의 發生狀況을 調査하고자 할 때에 于先 逢着하는 問題로서 國內에 發生된 傳染病에 對한 健全한 調査 記錄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點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各病別로 發生日字 發生의 原因 發生地名 終熄日字 發生의 現象 流行의 重要性 判斷, 實施된 防疫策에 對한 效力判定等에 關한 文獻의 求得은 容易하지 아니합니다. 이와같이 家畜傳染病의 發生에 關한 歷史의 考察面에 있어서도 큰 애로가 介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國內에 現在發生이 없는 傳染病에 對하여는 몇年 以來 發生이 없다는 科學的 論據가 있는 說明을 對外的으로 表示하기 어려운 感이 있습니다.

그리고 現在 發生은 確認되지 아니하였으나 發生即前狀態에 있는지도 모르는 病原體의 研究, 各種傳染性病原體에 對한 基礎的 實態調査 및 發病을 이르게한 病原體에 對한 正確한 診斷等에 關하여 여러가지로 研究는 進行되고 있습니다마는 物的 人的 諸要件으로 말미암아 어느 程度의 效果를 거둘수 있느냐가 問題가 될 것으로 生覺됩니다.

外國에서는 家畜傳染病의 研究對象이 從前에는 急性 傳染病이었던 것이었으나 漸次時代가 變遷함에 따라 많은 發展을 이룩하여 諸問題를 解決하고 지금은 오히려 寄生蟲病과 같은 慢性傳染病의 研究時代로 變化되어 가고있는 實情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不遠한 將來에 刮目할만한 發展이 要求되고 있는 것입니다.

[筆者—農林部 家畜衛生課]